

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 번호 | 접수 일시 | 발급 일시 | 처리기간 즉시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소유자 | 성명(명칭) |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| |
| | 주소 | (휴대)전화번호 | |
| 신고내용 | 이륜자동차번호 | | |
| | 신고사유 [] 용도폐지 [] 분실·멸실 [] 도난 [] 기타 | | 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·출장소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·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·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(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)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|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| ※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| 수수료 없음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이륜자동차번호판(멸실,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(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3.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| |

유의사항

-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.
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제2항)
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 제3항 제2호)
- (휴대)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,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